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, 법 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명을 “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”로 변경함(안 제명)
-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법 제6조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(안 제5조)
-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데이터의 조사, 오산시 데이터플랫폼을 규정(안 제7조 ~ 제8조)
-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,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규정(안 제9조 ~ 제10조)
- 실태점검,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, 사무의 위탁(안 제12조 ~ 제15조)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6월 5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18132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2
  - 전자메일 : mijin1008@korea.kr

##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,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·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,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직전 연도의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
2.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오산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
3.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
4.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·협력 방안
5.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) ① 시장은 오산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2.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3.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
4.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.

④ 협의회의 기능은 「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6조(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)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·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오산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(이하 “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
2.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
3. 데이터의 조사·수집·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
4.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·제공·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
5.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
6.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
7.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
8. 제8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

9. 제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

10. 제10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

11. 제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데이터의 조사 등)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8조에 따른 오산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오산시 데이터플랫폼) ①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(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, 속성, 특성,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) 및 데이터관계도(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)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데이터를 수집·분석·활용하기 위한 오산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오산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데이터기반행정 혁신)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데

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재난, 안전,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
2. 행정업무의 간소화·표준화·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
3.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)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
2. 지역의 고용창출,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
3. 특정 계층·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
4.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
5.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제11조(실태점검)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, 데이터 연계·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

방법,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산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.